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2021. 9.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74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8월 2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8월 31일(화)

2.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20.12.22) 조례에 반영
-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조항 신설(안 제28조제4항 제5호 및 제28조제5항)
- 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범위 확대(안 제30조)
- 라.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조항 삭제(안 제31조제4항)
- 마.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적정단가로 상향 조정(별표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18. 7월 행정안전부)

나. 입법예고 : 2021. 5. 27. ~ 6. 16.(제출된 의견 없음)

다. 예산 수반사항 없음

5. 검토보고

-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되었음.
-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8조 제4항의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¹⁾과 자치단체 귀책사유를 포함하여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업의 육성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

1) 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전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

료됨.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현재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있고 (안 제30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게 되어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있어 이를 바로잡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²⁾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보여짐.(안 제31조제4항)
- 그리고, 별표 2 〈물품의 품종 · 상태구분〉 규정 중 비소모품(비품)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바, 소모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단가(10만원)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비품으로 관리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향조정 되는 기준 단가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³⁾의 소모품의 범위 내에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모품으로 분류될지라도 그 용도나 성질상 주요물품은 별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단가 상향에 따른 공용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붙임: 참고자료(관계법령)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7.)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의 의의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참고자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2020. 8. 5.〉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사용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